LG누구나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회사가 위(1)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1)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라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면허시험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⑩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불문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 기재행위의 효력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등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서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위 (1)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9. 청약의 철회

(1)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9. 계약후 알릴 의무

(1)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때

③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다만, 피보험자의 변경은 이 보험에서 담보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위 (1)의 ①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5)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1. 피보험자의 변경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3. 보험료의 납입방법

(1)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4)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 소멸 또는 변경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14.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1)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로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위(1)을 적용합니다.

15.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효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예정이율에 3%를 더한 이율<

연11%>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4. 및 6.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6.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10.의 (1)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① 회사는 손해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2)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위 (2)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위 (2)의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10.의 (3)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손해가 위 (2)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 ③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7.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이외의 사유로 무효, 해지 또는 효력상실(27.의 (1)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위 (2)의 해지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8. 만기환급금등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손해의 발생

19. 손해의 통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

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0.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③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21.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배 해당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 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2. 후유장해 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해당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의 (한팔 또는 한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장해 및 발(가락)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 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3.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5배 해당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4.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손해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20.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 ·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 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5. 보험금의 지급방법

(1) 보험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2) 위 (1)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예정이율 + 1%이내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이자를 지급합니다.

26.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7. 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인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 밖의 사항

28. 보험계약자 대출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위 (1)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29.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독촉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0.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1.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2. 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이 계약중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입 명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이 약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34.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5.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후유장해등급표** (단위 : %)

후유장해의 종류	지 급 율
1. 눈(眼)의 장해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임 100

1) 두눈이 멀었을 때	60
2) 한눈이 멀었을 때	34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26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0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10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눈꺼풀이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9)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2. 귀(耳)의 장해	
①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②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③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④ 한귀의 청력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징해	
2)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3)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15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5
11)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2)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13) 한찰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4) 한다링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4
15)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20
16)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0
4)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마다)	8
5)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6) 한손의 첫번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15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대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대(1발가락마다)	3
10. 기타장해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반신불수가 된 때	100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2
4) 지라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34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LG누구나상해보험 특별약관

1)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추가약관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엘지누구나 상해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도에 피보험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배서승인을 받으면 피보험자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민법 제777조에 정한 친족간의 고용은 이 추가약관에서의 고용관계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취업불능 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엘지누구나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에 정한 후유장해등급표상의 지급율이 50%를 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취업불능 보상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단위를 말합니다)에 50%이상 후유장해가 두번이상 발생 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합니다.

(3)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5.외에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3.에서 정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손해보상후의 계약

보통약관 27.의 (1)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1, 22, 23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엘지누구나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2) 위 (1)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손해보상후의 계약

보통약관 27.의 (1)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1,22,23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 임시생활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엘지누구나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도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손해보상후의 계약

보통약관 27.의 (1)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1,22,23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5)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엘지누구나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는 5.의 ⑤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약정된 일당 입원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5.의 (1)의 ①~④,⑦~⑫, (2) 및 아래 사항에 따른 입원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임신, 출산, 유산

② 정상의 건강상태로서 아무런 객관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정규 또는 기타의 신체검사 및 의사가 불구로 진단한 경우를 제외한 검진 도는 X선 검사

③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④ 모든 정신질환 및 신경질환 또는 안전요법

3. 입원비의 보상

(1) 위 1.에 정한 질병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의 유효기간 동안에 입원환자로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회사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한 후 최고 26주까지의 입원기간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 입원비 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동일한 원인 또는 관련된 원인에 의하여 여러 차례 입원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원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 한 이를 하나의 질병에 의한 입원으로 봅니다.

4. 손해보상후의 계약

보통약관 27.의 (1)에 의하여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921,22,23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구 분	용 어 정 리
1. 질 병	보험계약이 발효되어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2.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먼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병원 및 의원	다음의 각 조건을 구비한 기관을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병원 및 의원면허가 있을 것 나. 부상자 또는 병자를 입원환자로서 수용하여 치료함을 기본으로 할 것 다. 등록 또는 유자격 간호사가 하루 24시간 간호할 수 있을 것

	라. 항상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할 것 마.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출 것 바. 진료소, 간호센타, 요양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아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치료소가 아닌 기관일 것

6)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 ·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⑦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⑧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다만, 위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위 (1)의 질병이라 함은 보험계약이 발효되어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한 질병을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5.에 정한 사항(단, 5의 (1)의 ⑤는 아래 ②로 대체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애

3. 보험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12.외에 보험계약 체결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4. 손해보상후의 계약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합니다.

(2) 보통약관 27.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이 특별약관의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1)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효력상실 된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효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에 3%를 더한 이율<연 11%>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보통약관 6.에서 정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 1.의 (2)에서 정한 "질병"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한 질병을 말합니다.

6. 계약연령의 계산

(1) 피보험자의 계약 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2) 위 (1)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 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연령에 의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21,22,23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7) 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보상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엘지누구나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사망보험금

(1) 회사는 피해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배 해당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운행외 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3. 후유장해보험금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었을 때에는 위 2.의 사망보험금에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해당액을 추가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3)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1)과 (2)를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의 상태가 신체의 같은 부위(한팔 또는 한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각각 손가락장해 및 발(가락)장해를 포함하여 같은 부위로 봅니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같은 부위의 등급 안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18,21,22,23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8) 단체취급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자로 된 자가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국영기업체,기업체 및 고장 등의 단체

② 제2종단체(법정단체) : 제1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등의 단체

③ 제3종단체(규약단체) :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써 단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 제3종 단체는 단체 소속원의 80%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

(1)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종단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개인별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라도 같은 직명 또는 직급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직명 또는 직급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험가입액을 각각 달리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1)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 단체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보험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3) (1), (2)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LG누구나해상보험 보통약관 12.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및 해당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가족확장담보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의 가족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보통약관 3.에서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위 (1)에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피보험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만1세 이상의 별거중인 미혼자녀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LG누구나상해보험 보통약관(21,22,23의 규정을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5일, 15일, 25일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3.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LG누구나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